

이 자료는 **8월 26일(금) 12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일	2022년 8월 26일(금) (총 4쪽)	담당	서울지원 자동차팀
			전재범 팀장(02-3460-3041) 서보원 과장(02-3460-3044)

중고차 구입 시 침수 흔적 철저히 확인해야

- 폭우 시 차량 침수 주의, 침수 시 자차보험 처리할 수 있어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차량 1만 2천여 대*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침수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침수차량 11,988대('22. 8. 23. 기준, 손해보험협회)

**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부분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일부 유통될 수 있어 중고차 구입 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020년부터 2022.8.11.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으로 관련 피해는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8.11.)	계
건수	93건	76건	29건	198건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므로 침수 전손 차량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및 제84조 ('21.10. 시행) :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보험가액 또는 시세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침수차 구별방법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차 구입 시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시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호우 예보 시 상습 침수지역 운행·주차 피하고, 차내 보관 물품은 반드시 회수

한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우 예보가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천변이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운행을 피하고,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단독사고특약 가입)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거나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주차나 차량 운행 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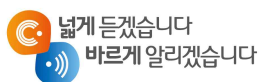
[소비자 유의사항]

1. 중고자동차 구입 시

- 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침수차 여부를 확인한다.
- 나.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 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한다.
- 라.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마. 배선 전체가 새것으로 교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바.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한다.

2. 자동차 침수 피해 예방

- 가. 호우 예보, 폭우 시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로 기상 상황을 실시간 확인한다.
- 나.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침수 예상 지역을 확인한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붙임]

1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침수 중고자동차 구입가 환급 요구

- 소비자는 2022. 5.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차량을 구매하고 400만원을 지급함.
- 인수 직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상 증상을 감지하여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침수차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사업자는 성능점검장에서 침수로 판정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거절함.
- 이에 신청인은 타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침수차량'이라는 판정서까지 받아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음.

【사례 2】 침수 미고지 중고자동차 구입가 환급 요구

- 소비자는 2021. 4.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차량을 구입 시 차량 인수과정에서 차내에 냄새가 심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사업자는 실내 세차를 하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해명함.
- 이후 실내 세차를 위해 방문한 업체에서 '침수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정비업체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여 '침수차량'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거절함.

【사례 3】 침수차량으로 의심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소비자는 2020. 8.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860만원을 지급함.
- 차량 운행 중 내부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커버 안쪽 등에서 흙, 모래, 풀 등이 발견되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침수차량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며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 함.

【사례 4】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미고지 된 침수 차량 환불 요구

- 소비자는 2016. 8. 중고차 구입 시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소비자는 차량 점검을 통해 침수로 인한 부식(바닥 매트 및 도어 등)을 확인하고 중고차 매매업체에 침수사실 미고지에 따른 차량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1. 중고 자동차 구입 시

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침수차 여부를 확인한다.

- 카히스토리의 차량 무료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로 보상이 접수되었던 차인지 조회할 수 있다.

나.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차에 탑승한 후 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풍기는지 확인한다.

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거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벨트가 교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차량 제조일자와 안전벨트 제조일자를 비교·대조해 본다.

라.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차량 트렁크 하부, 실내 시트의 사이, 헤드레스트 탈부착 부위, 시트 하단 스프링, 좌석 레일, 연료 주입구 등의 금속에 녹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퓨즈 박스나 배선 등은 잘 보이지 않고 물때나 진흙의 흔적을 제거하기도 힘든 부분이므로 각종 배선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연식이 오래되었음에도 배선 전체를 새것으로 교환한 흔적이 있다면 침수를 의심해야 한다.

바.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한다.

- 중고차 매매계약서에 '침수 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특약을 기재한다.

2. 자동차 침수 피해 예방

가. 호우 예보, 폭우 시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로 기상 상황을 실시간 확인한다.

-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의 '초단기강수예측', '1시간관측', '예보' 등의 기능을 통해 차량 운행경로 및 주차지역의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나.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침수 예상 지역을 확인한다.

-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차량 운행 및 주차 시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을 확인한다.